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1가단68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7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8.부터 2021. 6. 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병구

별지